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211
----------	-------

제출년월일 : 2023. 8. 14.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의무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채무보증에 대한 사항(안 제2·3·4조)
- 보증채무의 변경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보증채무의 이행에 대한 사항(안 제7조)

개정조례안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3. 6. 12. ~ 2023. 7. 3. (21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4】
- 방침결정문 : 【붙임 5】

[붙임 1]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을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에서는” 을 “신청서에는” 으로 하고, “각호” 를 “각 호”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채무발생” 을 “주채무 발생”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 라 한다)는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를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의결을 받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을 “제1항에 따른 시의회 의결을 받은” 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채무보증서의 교부)” 를 “(채무보증서의 발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3조에 따라” 로, “채무 보증서 발급신청서” 를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경우 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채무 보증서” 를 “채무보증서” 로, “경우에 사전에” 를 “때에는 미리” 로, “설정등” 을 “설정 등” 으로, “취득” 을 “확보”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취득할” 을 “확보할”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지급에 의하여” 를 “자금으로” 로, “취득하여야” 를 “확보하여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

른” 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3조에 따른” 으로, “상이 없는 것” 을 “같음” 으로, “교부한다” 를 “발급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 중 “변경코자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보증채무이행)” 을 “(보증채무의 이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제기간내” 를 “변제기간 내”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채무자의 변제를 받지” 를 “채권자가 변제받지” 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를 “시의회 의결을 받아” 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입 안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이 선 희
	담당·팀장 직위·성명	예산팀장 송 은 선
자	담당자 성명·전화	박 성 준 (행정 2810)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h2 style="margin: 0;">채 무 보 증 신 청 서</h2>				
① 사 업 명 (보증채무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②내용	채 권 자		채 무 액	원
	이 자 율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상 환 계 획			
③사유	주 채 무 발 생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채무보증신청의 근거			
	그 밖에 참고사항			
※ 준 수 사 항 1.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① 주채무자		② 채무건명	
③ 채 무 액	원	④ 이 자 율	
⑤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⑥ 상환재원	
⑦ 담 보		⑧ 융자재원	
⑨ 관계기관		⑩ 채무보증 근거	
⑪ 기 타			
<p>※ 준 수 사 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안산시가 보증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장 직인</p> <p style="text-align: left;">귀하</p>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h2 style="margin: 0;">채 무 보 증 서</h2>			
① 주채무자		② 채무건명	
③ 채 무 액	원	④ 이 자 율	
⑤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small>(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small>	⑥ 상환재원	
⑦ 담 보		⑧ 용자재원	
⑨ 관계기관		⑩ 채무보증근거	
⑪ 기 타			
<p>※ 준 수 사 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 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p>「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p>			
			년 월 일
안산시장		직인	
채 권 자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신청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p>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신청서에는 -- 각 호-----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주채무 발생----- 3. 그 밖의 ---- <p>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 ----- -----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기 -- -----.</p> <p>② --- 제1항에 따른 시의회 의결을 받은 ----- -----</p>

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 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지급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 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

-----.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 제3조에 따라 -----,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따라 ----- .-- 경우 제2항에 따른 -----.

② ---- 채무보증서----- 때에는 미리 ----- 설정 등 ----- 확보----- , 확보할 ----- 해당 ----- 자금으로 ----- 확보하여야 --.

③ --- 제1항에 따른 ----- 제3조에 따른 --- 같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7조(보증채무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자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따른다.

<삭 제>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 변제기간 내-----

-----.

② -----
- 채권자가 변제받지 -----
----- 시의회의
결을 받아 -----
-.

제8조(시행규칙) ----- 시행에 -----
-----.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제 호

안산시장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채무보증신청서			
① 사업명 (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			
② 내용	채권자	채무액	원
	이자율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상환계획		
③ 사유	주채무발생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채무보증신청의 근거 그 밖에 참고사항		
④ 준수사항			
1.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210mm×297mm(입력용지 60g/m²적합종류)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년도 분기)

주채무 자	용도	보 증 채무액	대출누 계	금기말 채무액	금 기 증		금기말 채무액	금기말 연채액	금기중 이 자 발생액	금기중 이 자 상환액	금기말 미 수 이 자
					대 출	회 수					

<삭 제>